

WTO/ DDA · FTA 농업협상 동향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국가간 교역의 증대는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의 증대를 의미하고 이것은 국가간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로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물품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싼 값에 살 수 있고, 생산자도 세계의 넓은 시장에서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세계적인 부를 증진시킨단 말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후진국의 경제발전(특히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선진국 경제에 후진국이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화는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을 극명하게 나눠 놓음으로서 분쟁과 갈등을 증대시키는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 자본의 대량유입과 대량유출에 따른 외환위기의 위험성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중·후진국이 감수해야 할 지도 모르는 부담이 상당하다. 경제적인 종속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인 종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화를 주장하는 미국과 대립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국 문화를 수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보인다.



☞ WTO/ DDA · FTA 농업협상 동향

1 협상동향 및 향후전망

- 2001년 출범한 DDA 협상은 주요국들 간의 대립으로 2006년 협상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2007년 7월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 세부원칙*(안)이 배포되면서 논의가 활성화됨
 - ▶ 특히, 올해 들어 EU·미국·브라질 등 주요국들은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강조하며 협상에 적극 참여
 - *세부원칙 : 관세 및 보조금의 감축방식 등을 정하는 것으로 세부원칙이 합의될 경우 회원국은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작성함
 - ▶ 논의의 진전을 반영하여 2008년 2월 세부원칙 수정안이, 2008년 5월에는 2차 수정안이 배포되었음.
- 농업 및 비농산물(NAMA) 분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각료회의를 앞두고 7월 10일(목) 의장 세부원칙 3차 수정안이 제시
 - ▶ 2차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세상한 및 특별품목 등 일부 쟁점에 대하여 최근 진행된 소규모 고위급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반영

*핵심이슈에 대해서 10여국 내외의 주요국을 초청하여 논의하는 회의로 5월말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우리는 관세상한(9개국) 및 특별품목 소그룹(13개국)에 참여하여 입장을 개진함

2 협상의 구도 및 분야

- DDA 협상은 그 명칭이 시사하는 것처럼 개도국의 개발을 중시하고 있으며 협상의 모든 요소에서 개도국 우대조치*(S&D)를 강조
 - ▶ 우리나라는 수입국으로 구성된 G10*과 특별품목 및 특별 긴급관세를 중시하는 개도국 그룹인 G33**에 적극 참여
 - *G10 :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등
 - **G33 : 인니, 인도, 중국, 필리핀
- DDA 농업협상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의 3분야로 나뉨.
 - ▶ 시장접근 분야는 품목별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수입물량(TRQ)*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며 주요국간 입장 차이가 큼
 - *저율관세수입물량 : 고추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수입량 이내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수

입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데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물량을 TRQ라고 함

- ▶ 국내보조 분야는 각국이 농업분야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규율 및 감축에 대해 논의
- ▶ 수출경쟁 분야는 수출보조금 및 식량원조 등을 다루며 논의가 상당히 정리된 것으로 평가

3 향후 대응 계획

- 7월 21일(월)부터 개최예정인 각료회의에서 세부 원칙 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협상에 대응
 - ▶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등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전략을 취하면서 핵심쟁점 중심으로 대응
 - ▶ 수입국 그룹(G10) 및 개도국 그룹(G33) 등 유사 입장과 공조를 강화하여 우리의 실익 확보 추구
 - 특히, 우리의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 적극 대응
- 각료회의 전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협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 ▶ 농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협상동향 설명회, 전문가 세미나, 세부원칙 타결시 세부원칙 순회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
- 효과적인 이행계획서(C/S) 작성을 위한 세부원칙상의 옵션에 따른 품목별 영향분석 및 양자협상 전략 수립
 - ▶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국별 관심사항 파악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 등
 - ※세부원칙 타결 후 이행계획서 작성 및 검증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전망
 - ※7월 말,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발동요건 완화문제로 미국 측과 인도·중국 측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음

88 FTA 농업협상 동향

1 추진경과

- 교역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 ▶ 칠레(2004년 4월), 싱가포르(2006년 3월), EFTA*(2006년 9월), 아세아(2007년 6월)과의 협정이 발효
 - *EFTA 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 한미 FTA는 2007년 4월 2일 타결하고, 6월 말 협정문에 서명, 현재 국회 비준동의절차 진행중
 - ▶ 캐나다(2005년 7월 협상개시), 인도(2006년 3월), EU(2007년 5월)와는 협상이 많이 진전되어 있고 금년 중 타결을 목표로 쟁점이 압축되고 있음.
 - 멕시코와는 SECA*로 추진(2006년 2~6월)하다가 FTA로 전환(2007년 12월)
 - *SECA(전략적경제보완협정) : FTA보다 자유화 정도가 낮은 지역협정
- FTA 대상국의 점진적 확대에 대비한 준비작업도 병행
 -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금년 중 마무리 추진 및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중
 - 금년 하반기, 중국·일본과이 FTA 추진 여부 검토 예정
 - ▶ 걸프협력회의*(GCC)와는 2008년 7월 협상개시(7월 9~10일, 서울)
 - *GCC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가 체결한 관세동맹
 - ▶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남미공동시장(MERCOSUR)*, 터키, 페루 등과는 2009년 이후 협상 개시 가능성을 검토 중
 - *MERCOSUR 4개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2 한·EU FTA

1 추진현황

- 협상출범(2007년 5월 6일) 이후 모두 7차례 협상을 개최



- 제7차 협상(2007년 5월 13~15일, 브뤼셀)에서는 6개 분과 협상(서비스, 원산지, 비관세 조치, 지적권, 정부조달, 총칙) 및 수석대표 및 분과장간 협의 진행
- 다만, 일반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을 해소했고, 전반적으로는 협상 타결을 위한 기본틀을 만들었다는 평가

② 분야별 주요결과

- 농업(상품양허) - 6차 협상까지
 - ▶ 우리측은 농산물 수정양허안과 함께 민감품목 예외적 조치를 묶어 제시하는 조건부 일괄타결안(Package)을 제시 (2007년 11월)
 -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한·EU FTA는 농산물 민감성 고려 원칙에 이미 합의하였음을 강조
 - ▶ EU측은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우리측 양허내용이 만족스럽다면 자율관세물량(TRQ),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등 우리측의 예외적 조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 EU의 상업적 이익이 있는 품목은 한·미 FTA와 동등한 대우 요구
- 위생·검역(SPS)
 - ▶ 지역화 인정절차, 수출작업장 승인, 분쟁해결절차 논의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음.
 - ▶ 지역화 인정절차는 2년간 상호 이해 제고 등 점진적으로 접근하고 수출작업장 승인은 위원회 논의 사항에 포함시

키는 방안 모색중

- 지리적 표시(GI)
 - ▶ 보호범위는 일반 농식품은 양측 기등록 품목을 약식절차를 거쳐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의견이 접근되고 있으나, EU측 보호품목이 많은 포도주·증류주에 대해서는 입장 조율 중
 - ▶ 보호수준은 지리적 표시를 상표에 우선할 것인지가 관건이며 우리 상표법 및 제3국의 상표와의 관계 설정이 주요 변수 -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법률상 쟁점이 될 요소를 점검해 대응할 예정

③ 향후 계획

- 제8차 협상은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나 시기는 미정이며,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간 협의, 분야별 소규모 협의 추진
- 앞으로 분야별 협의를 통해 농산물 양허 등과 관련한 EU측의 구체적 요구가 있을시 농업인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대응

③ 한·캐나다 FTA

① 추진현황

- 20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6차례 협상 진행
 - ▶ 세 차례 상품분야 실무협상(2007년 6월, 9월, 2008년 5월) 포함
 - ▶ 2005년 이래 3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함에 따라 협상 전체적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쟁점이 압축된 상태
- 농산물 소수 핵심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양허유형 합의
 - ▶ 쌀(16개 세 번), 일부 낙농품·가금육, 고추·마늘, 양파, 인삼 등 상당수 민감품목 양허제외 합의
 - ▶ 쇠고기·돼지고기 양허기간 및 대두·천연꿀·사료용 근채류·맥주맥 수입, 수입쿼터(TRQ) 물량 등 미합의

② 쟁점 및 향후 계획

- 캐나다측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관심품목에 대해 한·미 FTA 수준의 대우를 요구
- 협상 최종 타결에 대비하여 농업계 및 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한 대안을 마련
 - ▶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및 수입쿼타 물량 등은 국내 수급상황, 수입실적, 여타 FTA 협상내용 등을 감안하여 협의
- 제14차 협상은 2008.10월중 서울에서 개최 예정

4 한·인도 CEPA

① 추진현황

- 2006년 3월 1차 협상 개최 이후 12차례 협상 개최 (2차례 실무협의 포함)
 - ▶ 1차 협상에서는 협상시한, 분과 구성 등 협상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 논의
 - ▶ 2~6차 협상에서는 협정문안, 상품 자유화 방식 등 논의
 - ▶ 2007년 7월 7차 협상부터 상품양허안에 대한 논의 시작
 - 인도측은 당초 쌀·육류·사과·배·감귤 등을 포함한 대부분 민감
 - 농산물의 양허개선을 요구했으나 우리측이 부정적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자 현재 양허개선 요구대상 농산물을 상당부분 축소
 - 농산물은 여타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높지 않을 전망

② 쟁점 및 향후 계획

- 협상을 통해 인도측의 기대수준을 낮춤으로써 양허개선 요구대상 농산물 수를 대폭 감소시킨 것은 성과로 평가
 - ▶ 다만, 인도측이 양허개선 요구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협상 종료시까지 신중한 대응 필요
 - ※우리측은 인도 공산품 분야, 인도측은 우리 서비스분야 양허개선에 관심
- 농산물 양허는 품목별 민감성, 개방시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인도의 농업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계획

- 제11차 협상은 2008년 7월중 인도에서 개최 예정

5 한·멕시코 FTA

- 2005. 9월 양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SECA* 협상 추진에 합의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 전략적 경제보완 협정은 상품의 범위를 한정하여 협상하는 방식으로 FTA보다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은 협상

- ▶ 2006년 2월 협상을 개시, 연내 타결 목표로 추진하다가 제3차 협상(2006년 6월)이후 양허범위에 양국 입장이 대립, 협상 중단
- ▶ 우리측이 공산품 및 일부 농산물을 포함한 양허안을 제시한 반면, 멕시코측은 공산품의 일부만을 포함한 양허안 제시
- 2007년 7월 멕시코측이 SECA 대신 높은 자유화 수준의 FTA로 변경 추진을 희망하여 제2차 FTA 협상 개최(2007년 12월 5~7일)
 - ▶ 1차 협상에서는 멕시코 측이 제시한 협정문 잠정안을 검토하고, 양허협상 일정 등 협상추진계획을 논의
- 제2차 협상(2008년 6월 9~11일, 서울)은 멕시코가 내부사정상 상품양허를 마련하지 못해 협정문만 협의
 - ▶ 우리측은 민감한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비한 보호장치로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치 필요성을 적극 전달
 - ▶ SPS 협상에서는 양측의 SPS 제도를 상호 설명하는 데 주력
 - 멕시코 측은 지역화 인정, 위험평가 및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협정문안을 제시했으며 우리측은 WTO SPS 협정 이상의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대응
- 제3차 협상은 멕시코에서 9월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